



제 439회 국회 (정 기 회)
제5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타당성 재조사 실시 및 면제 근거 신설〉

■ 박수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612호)

2026. 9.

재 정 경 제 기 획 위 원 회

전문위원 유인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타당성 재조사 실시 및 면제 근거 신설(안 제8조의3 신설)	3
IV . 입법의 재정영향	11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박수민의원 등 10인

나. 제 출 일 : 2026. 6. 30.

다.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단계에서 타당성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사업 지정 이후 총사업비의 증가나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으로 사업의 경제성 및 재정적 타당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재검증하기 위한 타당성 재조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한편, 민간투자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물가 상승, 설계 변경, 사업 규모 확대 등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재점검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국가 균형 발전, 도시 기능 유지 또는 주택 공급 촉진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증가 또는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III. 검토의견

1. 타당성 재조사 실시 및 면제 근거 신설(안 제8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타당성 재조사 및 면제 - 주무관청은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대상사업의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하거나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주무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 발전, 도시 기능 유지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1)에 따르면, 주무관청이 총사업비 2천억원(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1천억원) 이상인 사회기반 시설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타당성분석을 실시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기·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할 것
2.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일 것

② 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그 타당성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6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이란 총사업비(제2조의2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천억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일반 재정사업은 「국가재정법」 제50조²⁾에 따라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거나 수요예측치가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경우 등에 기획예산처장관이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반면, 현행 「민간투자법」은 대상사업 지정 단계의 타당성분석은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 이후 사업 여건이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의 타당성 재조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민간투자법」 제7조³⁾에 따라 수립·공고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⁴⁾ 제5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당초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와 비교하여 물가인상분 및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사업물량 또는 토지 등의 규모 증가로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거나 추정 수요량(실시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시협약 시 수요량)이 30% 이상 감소하는 등 사업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에 민자적격성

2)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공고 등) ①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기획예산처공고 제2026-15호(2026.2.13.)

재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음.⁵⁾

개정안은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하거나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무관청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 균형 발전, 도시 기능 유지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간투자사업은 대상사업 지정부터 실시협약 체결 및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과정에서 사업비 증가 요인이 발생하거나 추정 수요가 달라질 수 있음. 이러한 변화가 큰 경우에는 대상사업 지정 당시의 경제성 및 정책적 타당성이 유지되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주무관청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 보임.

한편, 개정안의 면제 규정은 타당성 재조사 의무를 법제화하는 경우 재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 중 정책적 필요성이 큰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재조사할 경우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5)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58조(민자적격성 재조사) ① 주무관청은 해당 사업추진단계에서 당초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차 제안공고와 비교하여 물가인상분 및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사업물량 또는 토지 등의 규모 증가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0분의 20이상 증가하거나, 추정 수요량(실시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시협약시 수요량)이 100분의 30이상 감소된 경우 등 사업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민자적격성이 확보되는지의 여부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에 재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예외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민간투자사업은 타당성분석, 대상사업 지정,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사업계획⁶⁾ 제출·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⁷⁾을 통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단계를 거쳐 추진되며, 이러한 절차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일련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음.

사업의 중단 여부를 판단하는 타당성 재조사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중요한 사안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사업추진단계 중 어느 시점에서 실시할 것인지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한편,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경미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민간투자법」 제15조제1항⁸⁾에 따라 주무관청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자가 실시계획이나 사업비의 변경이 필요하여 변경승인

6) 사업계획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작성·제출하여 주무관청의 검토·평가를 받는 것으로서 총사업비의 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등을 포함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총사업비는 사업계획의 평가 및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의 조건으로 확정되며, 실시협약 체결 이후에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무상 사용기간 등)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실시협약에 명시된 총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

1.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웃돌거나 밑도는 경우

2.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을 신청할 때에는 공사의 시행방법과 공정별 시행계획 등을 제출하고, 공사비 산출근거와 자금조달계획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며,⁹⁾ 주무관청은 변경승인 과정에서 변경 요청된 공사 내용과 비용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절차가 실시계획 승인 이후의 타당성 재조사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법」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¹⁰⁾상 타당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2.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 관련 사항
3. 공정별 공사시행계획(공구별·단계별로 분할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분할실시계획을 말한다)
4. 필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 계획
5.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
6.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1.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구별·단계별로 분할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분할설계도서를 말한다)
4. 공사 설명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5.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6.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 사용 등에 관한 계획서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서류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에 관한 서류
9.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개선필요사항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에너지사용계획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1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12.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0)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타당성재조사의 요건)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국가재정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성 재조사에 상응하는 민자적격성 재조사 제도가 현행 「기본계획」에 이미 마련되어 있어 별도의 제도를 법률에 신설할 실익이 크지 않으며, 재조사 요건과 절차를 법제화할 경우 민간투자제도가 경직되어 민간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고 경제·금융 여건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¹¹⁾는 점에서 개정안의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현행 민자적격성 재조사와 타당성재조사 비교]

구분	민자적격성 재조사	타당성재조사
근거	▪ 「기본계획」 제58조	▪ 「국가재정법」 제50조,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
요건	▪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 ▪ 수요예측치 30% 이상 감소 ▪ 그 외 주요 사업내용 변경 시	▪ 사업중 예타 규모로 증가, 예타 없이 예산 반영 ▪ 총사업비 증가(1,000억 ↑ 15%, 1,000억 ↓ 20%) ▪ 수요예측치 30% 이상 감소, 그밖에 필요한 경우
조사 내용	▪ 타당성판단(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AHP종합평가) ▪ 적격성판단	▪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분석, AHP종합평가

자료: 기획예산처

또한, 타당성 재조사 면제와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현행 「기본계획」에도 일정한 경우 민자적격성 재조사 중 타당성 판단을 생략하는

의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 물가인상분과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사업물량 또는 토지 등의 규모 증가로 총사업비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10 부터 100분의 20 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 다만,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동조에 따른 대상규모로 증가하지 아니한 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11) 기획예산처는 2021년~2022년의 건설물가 급등에 대응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8조의4에 물가 특례를 신설한 사례와 같이 기본계획을 수시로 개정하여 사업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8조의4(수익형 민자사업 건설비용 급등 관련 특례) ① 주무관청은 2021년~2022년 건설물가 급등에 대응하여 수익형 민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제3차 제안공고 또는 실시협약 체결 시, 1회에 한하여 최초 불변가격 기준시점 총사업비(보상비 제외)의 최대 4.4% 이내의 금액을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다.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면제 근거를 신설할 실익이 크지 않아 개정안의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생략 및 면제 요건 비교]

구분	민자적격성 재조사	타당성재조사 ¹²⁾	타당성 재조사(개정안)
생략· 면제 요건	▪ 총사업비 증가 규모가 300억원 미만 ▪ 수요재조사결과 30% 미만 감소 ▪ 매몰비용大, 법정비용 반영 등 실익 부족	▪ 매몰비용 큰 경우 ▪ 타당성재조사 실익 부족 ▪ 지역균형발전 등 목적 ▪ 재해예방 등 시급추진 필요	▪ 국가균형발전 ▪ 도시기능유지 ▪ 그밖에 공익상 필요시 ▪ 상기 요건 해당시 민투심을 거쳐 결정

자료: 기획예산처

12)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2.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과 같이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4. 재해예방·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8조의3(타당성 재조사 및 면제) ① 주무관청은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대상사업의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하거나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 발전, 도시 기능 유지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IV. 입법의 재정영향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¹³⁾

문 의 처
02)6788-5153

13)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